

1. 의결주문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업무를 이관하고, 문화유산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신설하며,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업무를 궁능유적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

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수리분야 전통목재 등 수리재료·기법 육성 전담인력(8급 1명)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체하고, 칠백의총 기념관 확장 개관에 따른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(1명)를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8호 중 “편성·조정 및 집행”을 “편성·집행 조정 및 결산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9호 및 제10호 중 “국가민속문화재”를 각각 “국가민속문화재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16의2. 문화재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총괄 및 조정

제7조제3항제6호 중 “보호구역의 현상변경”을 “보호구역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현상변경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국보·보물”을 “국보·보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“명승·천연기념물”을 “명승·천연기념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천연기념물”을 “천연기념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3. 국보·보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

제8조제6항제4호 중 “국가민속문화재등”을 “국가민속문화재등(궁능유적

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각각 “7퍼센트”로 한다.

제12장(제24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273”을 “274”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272”를 “273”으로 하며, 일반직 계 “271”을 “272”로 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9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2 중 총계 “282”를 “283”으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“281”을 “282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280”을 “281”로 하고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“9”를 “10”으로 한다.

별표 6 중 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1”을 “2”로 하고, 학예연구사 “1”을 “0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중 총계 “31”을 “30”으로 하고, 1.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일반직 계 “30”을 각각 “29”로 하며, 임업서기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12 중 행정주사보·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1”을 “0”으로 하고, 운전서기보 1 다음에 “학예연구사 1”를 신설한다.

별표 18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·②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③ ----- ----- 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문화재청 소관 예산의 <u>편성·조정 및 집행</u> 에 관한 사항	8. ----- <u>편성·집행 조정 및 결산</u> -----
9. ~ 18. (생략)	9. ~ 18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문화재정책국) ①·② (생략)	제6조(문화재정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16. (생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6의2. 문화재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총괄 및 조정</u>
17. ~ 21. (생략)	17. ~ 21. (현행과 같음)
④ 무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국가민속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</u> 에 관한 사항	9. <u>국가민속문화재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-</u> --

10. <u>국가민속문화재</u> 의 <u>국외반출 허가</u> 에 관한 사항	10. <u>국가민속문화재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-</u> -----
11. ~ 18. (생략)	11. ~ 18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생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·② (생략)	제7조(문화재보존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사적 및 그 <u>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</u> 에 관한 사항	6. ----- <u>보호구역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의 현상변경에</u> ----- --
7. ~ 28. (생략)	7. ~ 28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유형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⑤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국보·보물의 현상변경제도</u> <u>운용에 관한 사항</u>	3. <u>국보·보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</u>
4. ~ 11. (생략)	4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국보·보물과 국가지정문화재</u> 및 <u>국가등록문화재</u> 가 아닌	12. <u>국보·보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</u>

문화재의 국외 반출허가에 관한 사항	<u>제외한다)</u> ----- -----
13. ~ 20. (생략)	13. ~ 20. (현행과 같음)
⑥ 천연기념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명승·천연기념물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</u>	3. <u>명승·천연기념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</u> -----
4. ~ 8. (생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천연기념물 국외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</u>	9. <u>천연기념물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</u> -----
10. ~ 18. (생략)	10. ~ 18. (현행과 같음)
⑦ (생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~ ⑤ (생략)	제8조(문화재활용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근대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국가민속문화재등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</u>	4. <u>국가민속문화재등(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는 제외한다)</u> -----
5. ~ 18. (생략)	5. ~ 18. (현행과 같음)
⑦ · ⑧ (생략)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	제21조(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

정원) ① 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, 별표 5의2의 정원 중 9명(7급 7명, 8급 2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

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,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(7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④ 삭제

⑤ ~ ⑧ (생략)

정원) ① -----

---. -----

--- 7퍼센트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. -----

----- 7퍼센트-----

-----.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・⑩ 삭 제

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. 다만,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으며, 별표 15의2의 정원 중 1명(8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⑫ ~ ⑭ (생 략)

제12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

제24조(평가대상 조직) 「행정기관
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
칙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
문화재연구소에 두는 평가대상
조직은 별표 18과 같으며, 그 구
체적인 사항은 「책임운영기관
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
로 정한다.

⑪ -----

---. -----

----- 7퍼센트-----

-----.

⑫ ~ ⑭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5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 계	<u>273</u>	<u>274</u>	+1
1 .			
공무원(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<u>272</u>	<u>273</u>	+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271</u>	<u>27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임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<u>9</u>	<u>10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의2]

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(제21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총 계	· <u>282</u>	· <u>283</u>	+1
1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<u>281</u>	<u>282</u>	+1
· · 일반직 계	· · <u>280</u>	· · <u>281</u>	+1
· ·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 ·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· · <u>9</u>	· · <u>10</u>	+1
· ·	· ·	· ·	

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]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	.		.		.		
	.		.		.		
행정주사보	.	임업주사보	또는	<u>1</u>	<u>2</u>	+1	
시설주사보	.						
	.		.		.		
	.		.		.		
학예연구사	.		<u>1</u>	<u>0</u>	-1		
	.		.		.		
	.		.		.		

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0]

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5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31	30	-1
1 공무원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	30	29	-1
일반직 계	30	29	-1
임업서기	3	2	-1

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2]

칠백의총관리소 공무원 정원표(제22조제7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 · 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1</u>	<u>0</u>	-1
·	·	·	
·	·	·	
<u>학예연구사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